



## 고대 이스라엘의 법관 선발기준과 윤리강령

소형근(서울신대)

### 1. 서론

한 나라의 ‘법관(judge)’은 자유(liberty)와 평등(equality)과 정의(justice)를 실현하는 자들로 법과 양심에 따라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법관’을 라틴어로 ‘이우텍스’(iudex)라고 하는데, ‘이우텍스’는 ‘법’을 의미하는 ‘이우스’(ius)에서 기원되었다. 그런데 ‘이우스’는 ‘법(law)’이라는 의미 외에도 ‘정의(justice)’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법’과 ‘정의’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법’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법을 해석하는 ‘법관’은 ‘정의를 실행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법관’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청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 규칙 제21호에는 법관들에게 일곱 가지 「법관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법관의 사법권 독립수호이고, 둘째는 법관의

www.kci.go.kr

품위유지이며, 셋째는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고, 넷째는 직무의 성실한 수행이며, 다섯째는 법관의 직무외 활동, 즉 학술활동이나 종교, 문화단체 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여섯째는 법관의 경제적 행위제한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다.<sup>1</sup> 대한민국에서 법관이 되는 길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상위권에 합격해야만 하며, 법조일원화의 원칙에 따라 일정기간<sup>2</sup> 법조경력을 쌓은 후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한 나라의 ‘법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관 선발기준과 윤리강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조직의 일면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고대 이스라엘의 법관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성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관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다. 이들의 출신성분들은 다양했으며, 오늘날처럼 ‘시험(test)’이나 ‘교육과정(curriculum)’ 이수를 통해 얻게 된 지위가 아니었다. 구약성서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법관’의 신분을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면, 첫째는 공동체 대표자로서 법관들이 있었고, 둘째는 종교 지도자들로 제의재판을 수행하던 법관이 있었으며, 셋째는 임명직 관리로서 법관이 존재하고 있었다.<sup>3</sup>

---

\* 이 연구는 2020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74040#0000>

2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3 소형근,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조직들과 재판관들”,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155-175.

## 1) 공동체 대표로서 법관

### (1) 가장(pater familias)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시대는 소위 ‘분절부족사회(segmented lineage society)’로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성문화 된 법에 의해 사회질서와 사회정의를 실현해 가기보다는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가장(pater familias)’이 마치 오늘날의 ‘법관’이 되어, 당시 관습들과 관례들에 근거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던 시대였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이었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래와 아브라함의 첩 하갈 사이의 분쟁(창 16:1-6)이나, 라반과 야곱이 가신상이었던 ‘드라빔(תרומים)’의 행방을 놓고 펼쳤던 분쟁(창 31:43-55)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 두 사건 모두 집안의 대표가 되는 ‘가장들’이 나서서 분쟁을 해결한 사례였다. 따라서 분절부족사회에는 임명직 ‘법관’이 아닌, 집안의 우두머리가 가족내 갈등상황이나 집안과 집안 사이의 분쟁사건을 당시 관습과 관례에 따라 해결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Verhandlung)’로 해결했다.<sup>4</sup>

### (2) 사사(Judge)<sup>5</sup>

고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이자, 통치자인 ‘사사’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사로 나온다. 특별히 구약 성서 사사기 4장 5절에는 여성 예언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Deborah)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벵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고, “이

4 크뤼제만(F. Crüsemann)에 따르면 분절부족사회는 분쟁 당사자들 간의 ‘자조(Selbsthilfe)’와 ‘협의(Verhandlung)’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참고, F. Crüsemann,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Chr. Kaiser, 1992), 91-94.

5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 이전 시대인 ‘사사’를 가리키는 영어 ‘저지(judge)’는 히브리어 ‘쇼페트(שופט)’로 전문적인 ‘법관’의 개념보다는 ‘통치자(ruler)’의 의미가 더 강하다.

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고 알려준다. 그러나 보링(R. G. Boling)은 여기서 사용한 ‘재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미쉬파트(מִשְׁפָּט)’를 법정에서 행해지던 재판이라기보다, 어떤 특정한 조사에 대한 ‘결정(decision)’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sup> 구약성서에서 히브리어 ‘미쉬파트’에 대한 용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사기 4장 5절의 간단한 진술만을 놓고 봤을 때, ‘재판’으로 해석해야 할지, 혹은 특정 사건에 대한 ‘결정’으로 이해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사사기 4장 5절을 제외하고는 ‘법관’으로서 드보라의 모습은 볼 수 없고, ‘전쟁 용사’로서 드보라의 묘사만을 볼 수 있으며(삿 5장), 드보라가 머물렀다는 ‘벧엘(Bethel)’이라는 장소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제의와 관련된 장소였다(창 12:8; 13:3-4; 28:10-22; 35:7; 삼상 7:16; 왕상 12:29 등).<sup>7</sup> 따라서 드보라의 ‘미쉬파트’ 행위는 전문 ‘법관’으로서 ‘재판’이라기보다는 통치자인 ‘사사’로서 특정 사안을 결정하는 위치의 신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지만 사사는 고대 이스라엘의 ‘왕(king)’을 대신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백성들 사이의 분쟁 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은 사사들이 할 수 있었던 임무들 중에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 (3) 왕

주전 11세기경에 사울(Saul)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 왕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법관’으로서 모습은 구약성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 등극한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는 ‘법관’으로서 왕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본문들이 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은 예루살렘

6 R. G. Boling, *Judges* (AB 6A), (New York: Garden City, 1980), 95.

7 T. J. Schneider, *Judges* (Berit Olam)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69.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 가에서 있다가 무명의 한 사람이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 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 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 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이오.” (새번역, 삼하 15:3-4)

바인펠트(M. Weinfeld)는 이 본문을 통해 다윗 왕이 백성들의 소송을 들어 줄만한 관리들이나, 왕의 대리인으로서 법관들을 세우지 못했음을 알려준다고 주장한다.<sup>8</sup> 실제로 왕정초기에 왕의 관리목록(삼하 8:15-18; 20:23-26)에는 법관의 이름이 빠져 있다.<sup>9</sup> 이와 연장선상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왕궁을 짓는 과정에서 왕궁 내에 “재판을 위한 주랑”(왕상 7:7)을 지었고, 또한 재판을 통해 살아 있는 아이의 생모(生母)를 찾아주었다(왕상 3:16-28). 따라서 이스라엘 왕정초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들의 재판을 왕이 직접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 (4) 장르

이스라엘 전 지역의 모든 소송을 왕 한 사람이 직접 도맡아 재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마치 광야시대에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의 소송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출 18:13) 재판에만 몰두해야 하는 상황과 유사

8 M. Weinfeld, “Judge and Officer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JOS* 7 (1977), 86, n. 134.

9 A. A. 앤더슨, 『사무엘하』 (WBC 11) (권대영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331-332.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은 자신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건은 직접 재판했지만, 예루살렘 밖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갈등은 왕이 아닌, ‘관리’나 왕의 ‘대리인’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했다. 왕의 대리인으로서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들 중에는 지역 ‘장로들’이 있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장로’는 단순히 ‘나이든(old)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장자(elder)’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연장자’라는 의미에서 ‘장로’는 한 부족이나 한 가문 혹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성서에서 쓰이고 있다(출 12:21; 19:7이하 등).<sup>10</sup> 이들은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자들이라기보다 관습적으로 지역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지역재판인 ‘성문재판’을 담당하는 자들로 나온다. 예를 들면, 분열왕국 시대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그의 부인이 세벨이 지역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 재판을 통해 나봇을 죽이도록 사주했다(왕상 21:8-15). 결백한 나봇이 죽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법관들은 지역 ‘장로들’이었다.<sup>11</sup>

## 2) 종교 지도자로서 법관

고대 이스라엘의 ‘성소(sanctuary)’와 ‘성전(temple)’은 제사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의행위를 진행하던 장소였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은 제의행위만을 담당하지 않고, 율법을 교육하는 역할도 수행했으며(미 3:11; 사 2:3; 호 4:4; 신 31:9 등),<sup>12</sup> 또한 정결과 부정을 결정하는 재판 담당자로도 활동했다. 예를 들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

10 J. Conrad, art. 𐤇𐤍 (ThWAT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639-650.

11 볼프는 자신의 저서에서 미가 3장 1절과 11절에서 언급된 “우두머리들”을 지역의 ‘장로들’로 생각한다. 참고, H. W. Wolff, *Micha* (BK XIV/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67.

12 F. Crüsemann, *율법*, 118; 참고, F. Crüsemann, *Der Widerstand gegen das Königtum* (WMNAT 4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194-222.

야 할지에 대한 판결을 제사장이 담당했고(레 13장), 여성의 간음 여부를 판결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었다(민 5:14-30). 또한 주전 9세기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대제사장 아마라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 즉 제의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담당했다(대하 19:11). 그런데 구약성서에서 제사장의 재판영역이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고, 살인사건과 고소사건까지 확장되었으며(신 17:8-9), 논쟁하는 쌍방의 모든 재판에 대해서도 제사장이 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신 19:17). 그런데 포로이후 본문에 해당하는 역대상 26장 29절에는 레위 사람들 중에 “성전 밖에서” 일어난 소송을 재판하는 법관이 있었고, 역대상 23장 4절 또한 레위 사람 중에 재판관이 임명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예는 구약성서에서 매우 드문 현상으로<sup>13</sup> 역대기 사가의 특별자료에 해당하며, 임태수는 레위 사람이 맡게 된 성전 밖의 일이란 결국 성전과 관련된 일이라고 추정한다.<sup>14</sup> 그런데 여기서 논지의 핵심은 과거에는 성전 밖에서 발생한 소송건을 제사장이 법관이 되어 전담했었는데, 이제는 레위 사람과 법관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역대기가 제시하고 있는 두 본문(대상 23:4; 26:29)은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다윗 시대로 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본문이기에 브라운(R. Braun)은 이 두 본문들이 포로 이후 시대이면서 마카비 이전 시대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sup>15</sup> 이 두 본문이 어느 시대에 속하건 레위 사람의 성전 밖에서 법관으로서 활동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사장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오래 전부터 제의행위 외에도 재판활동을 이어오던 그룹이었으며, 포로 이후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재판행위를 넘겨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3 임태수, 『역대상』(성서주석 12)(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405.

14 윗글.

15 로디 브라운, 『역대상』(WBC 14)(김의원 옮김)(서울: 솔로몬, 2006), 443-444.

### 3) 임명직 관리로서 법관

#### (1) 고관

구약성서에서 ‘고관’은 히브리어 ‘사르(sar)’로 왕이 임명한 ‘관리’를 의미한다. 히브리어 ‘사르’는 우리말로 ‘지도자’, ‘수령’, ‘방백’, ‘우두머리’, ‘두목’, ‘고관’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사르’가 구약성서에서 ‘군대 지휘관’이나, ‘지방 통치자’로 자주 등장하지만(민 21:18; 사 4:2; 삼상 17:55; 사 1:23 등), 포로기와 포로 이후 본문들 중에는 ‘사르’가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스 8:24), ‘지파의 우두머리’(대상 27:22), 때로는 ‘장로들’(겔 11:1)을 지칭할 때도 있다. 구약성서에서 ‘사르’가 법관으로 처음 등장한 본문은 출애굽기 18장이며, 여기서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나온다(출 18:21). 예를 들면, 우리말 ‘천부장’은 히브리어 ‘사르 엘레프(שָׂר אֶלֶף)’로 ‘천명의 사르’라는 뜻이며, 군사적인 의미로 ‘천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라는 의미이다.<sup>16</sup> 이들은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의 “작은 일”을 재판해야 한다(출 18:22). 또한 예언자 이사야는 ‘사르’의 불의한 재판을 비판한 바 있다. 예언자 이사야에게 있어서 ‘사르’는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 자로 묘사되고 있다(사 1:23). 빌트베르거(H. Wildberger)는 이사야 1장 23절의 ‘사르’가 주전 8세기 재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말한다.<sup>17</sup> ‘사르’가 왕이 임명한 ‘관리’이면서 또 다른 다양한 기능들(군사적, 행정적 기능들)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르’는 당시 전문적인 법관이 아닌, 필요한 경우에 재판을 수행하는 ‘기능인(Funktionsträger)’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16 H. Niehr, art. שָׂר (ThWAT VII) (Stuttgart: Kohlhammer, 1993), 874.

17 H. Wildberger, *Jesaja 1-12* (BK X)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0), 61.

## (2) 전문 법관으로서 쇼페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문 법관’으로서 재판관은 언제 출현했을까? 일반적으로 주전 7세기 유다 왕 요시아 시대로 본다. 우리말 ‘법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쇼페트(שׁפֵּט)’인데 주전 7세기 이전에 사용하는 ‘쇼페트’는 ‘전문 법관’이 아니라, ‘사사’로 번역되거나, 혹은 전문 법관이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기능인’으로 불리는 호칭일 뿐이다. 즉, 주전 7세기가 되어야지 ‘전문 법관들’이 유다의 지역 성읍들과 중앙 예루살렘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본문이 신명기 법전이다. 신명기 16장 18절에는 각 성에 지파를 따라 법관들과 지도자들을 임명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전 지역의 성문에서 활동하게 될 법관들과 관리들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말하는 법관들의 출신성분에 대해 바인펠트(M. Weinfeld)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중에서 법관이 선발되었다고 주장한다.<sup>18</sup> 하지만 제사장들은 재판영역은 주로 성소나 성전이었으며, 이들은 재의재판을 주로 담당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문재판에는 새로운 신분의 법관들이 임명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이스라엘의 “지파들(שׁבֵּטִים)” 중에서 법관을 선발했다고 한다면 티게이(J. H. Tigay)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법관이 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19</sup> 이러한 ‘법관’은 유다의 지방 성읍에도 임명되었고, 중앙 예루살렘에도 임명되어 상주하고 있었다(신 17:9). 특히, 예루살렘 중앙 상급법정에는 ‘법관’의 두 그룹인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레위 사람 제사장”인 히브리어 ‘코헨(קוֹהֵן)’은 ‘제의영역’을, ‘재판장’인 히브리어 ‘쇼페트(שׁפֵּט)’는 ‘비제의영역’을 나누어 담당했던 것이다.

18 M. Weinfeld, *윗글*, 76-80.

19 J. H. Tigay,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Israelite Religion in the Light of Hebrew Inscriptions* (HSS 31) (Atlanta: Scholars Press, 1986), 160.

### 3. 고대 이스라엘의 법관 선발기준

위에서 살펴본바 고대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신분의 ‘법관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들로, 종교적인 책임자로, 그리고 임명직 관리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 세워졌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관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법관’ 선발기준을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다.

#### 1) 출애굽기 18장 21절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생활 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재판의 짐을 나누어줄 법관임명을 제안한다. 우선 모세는 출애굽 후 광야생활을 하고 있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출 18:20)를 가르쳐야 했다. 우리말 “율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크(חוק)’이고, 우리말 “법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라(תורה)’인데, ‘호크’와 ‘토라’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법령’, ‘훈계’, ‘지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모든 규범을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는 광야시대의 초대 법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법률교육을 받은 자들 중에서 법관을 선발해야 한다. 그런데 ‘법관’ 선발기준에 조건이 있다. 그 기준은 ‘신앙’과 ‘인성’의 영역에서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말 “능력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안쉐 하일(אִנְשֵׁי חַיִל)’인데, ‘안쉐’는 ‘사람(man)’에 대한 복수형이고, ‘하일’은 구약성서에서 보통 ‘전쟁(war)’과 관련된 용어로 ‘군대(army)’ 혹은 ‘힘(strength)’을 의미한다. 하지만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맥락에서 ‘안채 하일’은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뜻한다.<sup>20</sup> 그렇다면 법관으로 임명받는 자들의 능력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둘째 진실하며,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야 한다(출 18:21). 이 세 가지 조건은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sup>21</sup>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사람과 관계에서는 진실해야 하며, 물질에 대해서는 뇌물을 미워해야 한다. 이런 조건 하에 선발된 법관이라야지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법관으로 선발된 자들을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임명하라고 말한다(출 18:21).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히브리어 ‘사르(שׂר)를 지칭하는 것으로 ‘군대 지휘관’을 의미한다. 크니림(Knierim)에 따르면 ‘법관들’은 ‘군대 지휘관’까지 함께 넘겨받게 된 셈이다.<sup>22</sup>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18장은 모세로부터 법률교육을 받은 자들 중에서 신앙과 인성을 확인한 후 공동체의 법관으로 임명했으며, 이들에게 ‘군대 지휘관’의 권한까지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온 백성 중에서 모세로부터 법률교육을 받은 자들 중에 최초 선발**  
 → 신앙과 인성을 확인  
 → 이들을 ‘법관’으로 임명(군대 지휘관 권한까지 위임)

20 H. Eising, art. תִּחַל (ThWAT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902-911.  
 21 강성열, 『출애굽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320.  
 22 R. Knierim, “Exodus 18 und die Neuordnung der Mosäischen Gerichtsbarkeit”, ZAW 73 (1961), 168-171.

## 2) 신명기 1장 13-15절

신명기 1장 9절에서 모세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라고 말한다. 모세의 이 표현은 ‘사법적인 책임’, 즉 ‘홀로’ 재판하던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를 연상해 볼 수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신 1:12)고 말한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 ‘홀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명기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은 모세와 사법적 책임을 나누어 짊어질 법관 선발과 임명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sup>23</sup> 신명기 1장 13절 이하의 출애굽기 18장과 동일하게 모세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출애굽기 18장의 본문과 법관 선발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미디안 출신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히브리인 모세에게 법관 선발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나오지만, 신명기 1장 13절 이하에는 모세가 직접 법관 선발기준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출애굽기 18장이 법관 선발대상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고 있다면, 신명기 1장은 “각 지파” 내에서 법관을 선발하라고 범위를 제한시키면서 각 지파에게 권한을 위임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신명기 16장도 동일하다(“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18절]). 신명기 1장 13절에서 모세는 우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선발하라고 말한다. 즉, 신명기 1장의 선발기준은 세 가지<sup>24</sup>이다. 첫째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는 자”라야 한다. 먼저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캄(חכם)’으로 구약성서에서 ‘하캄’이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지만, 이 맥락에

23 베이올라, 『신명기』(원진희 옮김) (서울: 동연, 2010), 42-44.

24 우리말 개역성서에서는 법관 선발기준을 두 가지(“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로 생각할 수 있으나,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세 가지 선발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지혜로운 자들”과 “지식을 갖춘 자들”과 “인정받는 자들”이다.

서는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춘 현명한 자’로 이해할 수 있다.<sup>25</sup> 또한 ‘지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빈(בִּין)’의 니팔형(niphal) 분사인데, 히브리어 ‘빈’은 구약성서에서 보통 ‘구별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며, 여기서는 ‘분별력 있는 자’, ‘통찰력 있는 자’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정받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다(אָדָּא)’의 수동형 분사로 ‘어떤 분야에 정통한 자’라는 의미로 쓰인다(Gesenius, 290).<sup>26</sup>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모두를 “수령(שׁוֹרֵט)”으로 삼고(신 1:13), 이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과 “조장”으로 삼으라고 말한다(신 1:15). 앞서도 언급했지만, “천부장”은 히브리어 ‘사르’에 해당하는 자로 ‘군대 지휘관’을 의미하며, 이들에게는 사법적 권한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서 지위가 위임되었다. 하지만 신명기 1장 15절에 나오는 “조장”은 새로운 그룹의 등장이다. 우리말 “조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쇼테르(שׁוֹטֵר)’로, 바인펠트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법관 외에도 기록을 위한 비서(secretary)와 사법적인 행정 처벌 수행을 담당하는 경관(constable)과 법정 안내를 담당하는 안내원(attendan)이 필요했다고 주장한다.<sup>27</sup> 따라서 신명기 1장 15절에 나오는 “조장”에 해당하는 ‘쇼테르’는 법정에서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던 ‘관리’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명기 1장 13절 이하에서 사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재판관을 담당하게 했던 사람들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었으며, 이들은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춘 현명한 자이면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자들이었고, 자신들이 담당한 분야에 정통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조장”인 ‘쇼테르’는 법관을 돕거나, 법정에서 관리로 업무를 수행하던 자였다. 결론적으로 신명기 1장 13절 이하의 법관 선발기준을 다음과 같

25 H.-P. Müller, art. בִּין (ThWAT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920-944.

26 참고, G. J. Botterweck, art. אָדָּא (ThWAT III) (Stuttgart: Kohlhammer, 1982), 479-511.

27 M. Weinfeld, 윗글, 84.

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선발

→ 모세가 이들을 수령으로 삼음

→ 이 수령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과 조장으로 임명(‘법관’과 ‘관리’)

출애굽기 18장과 신명기 본문(1장과 16장)의 법관 선발기준을 종합해 보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온 백성을 대상으로 하여 율법교육을 받은 자들 중에서 모세가 신앙과 인성을 확인한 후 법관으로 임명하되, 이들에게 군대 지휘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면, 신명기 본문에서는 각 지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모세가 직접 이들을 수령으로 삼았고, 이들을 군대 지휘관으로서 권한뿐 아니라, 법관과 법정관리의 역할까지 맡겼던 것이다.

#### 4. 고대 이스라엘의 법관 윤리강령

구약성서에는 법관 선발기준과 임명에 대한 보도와 법관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수행할 때 꼭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 제시되고 있다. 이 윤리강령은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수여를 받은 모세로부터, 혹은 왕으로부터 기인되었다.<sup>28</sup>

28 본 논문에서 다룬 법관의 윤리강령은 법관 선발과 관련된 본문들만을 다룰 것이며(신 1:16-17; 16:18-20; 대하 19:6-7, 9, 11), 출애굽기 23장 1-9절은 ‘공정’에 대한 법 규정으로 법관에 대한 독립적인 윤리강령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본 연구의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 1) 신명기 1장 16-17절

신명기 1장 16절 이하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관들’에게 주어지는 윤리 강령이 나온다. 모세는 ‘법관’으로 활동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윤리강령을 말하면서 그 일성(一聲)으로 대전제에 해당하는 ‘공정한 판결’을 명령한다. 그렇다면 법관들에게 “공정히 판결”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신명기 1장 16절의 “공정히 판결”하라는 모세의 명령에 가장 앞서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모아(שמעו)’이다. 이는 히브리어 동사 ‘사마’의 부정사 절대형으로 이 맥락에서는 모세의 확고한 의지이면서 명령으로<sup>29</sup> 법관들을 향해 모세는 ‘들으라!(hear!)’고 명령한다. 법관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법관들은 소송의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형제들의 송사내용을 자세히 들어야 한다(신 1:16b).<sup>30</sup>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 당사자들의 송사내용을 경청해야 한다. 그러면서 신명기 1장 16절 후반절에는 “공정히 판결”을 내리되,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타국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게르(ger)’이다. 미크(T. J. Meek)는 신명기 본문의 ‘게르’를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외국인으로 이해했고,<sup>31</sup> 알렌(W. C. Allen)은 ‘게르’가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던 자들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sup>32</sup>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성서의 ‘게르’는 본래 출신 공동체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사회로 이주하여 다양한 집단이나 사람들과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방인을 의미한다.<sup>33</sup> 어떤 면에서는 이들은

29 한동구 외, 『신명기: 원문번역, 역사비평적 주석』(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50.

30 율글, 49.

31 T. J. Meek, “The Translation of Ger in the Hexateuch and its Bearing on the Documentary Hypothesis”, *JBL* 49 (1930), 172-180.

32 W. C. Allen, “On the Meaning of in the Septuagint”, *The Expositor* IV/10 (1894), 264-275.

33 크리스티아나 반 하우튼,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이영미 옮김)(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22; 참고. 라이너 케슬러,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논단』 51집 (2014년 3월), 12-30.

그 사회에 동화된 이방인인 셈이다. 따라서 모세가 법관들에게 명령한 윤리 강령의 대전제는 “공정히 재판”하되, 송사의 내용을 자세히 경청해야 하며, 이주 이방인 ‘게르’ 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주어 ‘공정한 재판’ 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일러준다.

법관들에게 주어진 윤리강령의 첫 번째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외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님(פנים)’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얼굴’이다. 구약성서의 ‘파님’은 단순히 사람의 ‘얼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전체를 의미하면서(신 7:10)<sup>34</sup> 동시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포함한다.<sup>35</sup> 따라서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가 되는 사회적 지위까지를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불공평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관용구에 해당한다.<sup>36</sup> 법관들에게 주어진 이 윤리 강령이 지혜문학의 본문인 잠언에도 언급되고 있다.<sup>37</sup> 따라서 법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첫 번째 윤리강령으로 사람의 외모, 즉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지 말고 재판해야 한다. 두 번째 윤리강령은 “귀청을 차별 없이” 들어야 한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서에는 우리말 “차별 없이”에 해당하는 부사구가 나오지 않는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에서 직역하면 ‘큰 것(자)처럼 작은 것(자)에 경청해야 한다’<sup>38</sup>로 수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큰 것(자)처럼

34 신명기 7장 10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야훼는)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의 얼굴에 보응하여 그를 멸하시고, (야훼는) 지체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의 얼굴에 반드시 보응하신다.’

35 베이올라, 윗글, 48.

36 참고. 롤랜드 E. 머피, 『잠언』(WBC 22) (박문계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308.

37 “재판할 때에 낮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잠 24:23b), “사람의 낮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잠 28:21a).

38 히브리어 미완료 2인칭 단수형과 복수형은 명령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참고. 권성달, 『구약성경 히브리어』(개정 4판) (서울: 총신대학교 성지언어연구소, 2018), 98. 한동구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차별 없이 들어야 하며”라고 사역하고 있다. 참고. 한동구 외, 윗글, 49; 최종원, “신명기의 사랑과 계약에

작은 것(자)에 경청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큰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형용사 '가돌(גדול)'은 사물이나 혹은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으며, '작은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형용사 '카톤(קטן)'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만약 히브리어 형용사들이 사물을 지칭한다면, 큰 소송사건이나 작은 소송사건에 대한 경청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히브리어 형용사들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힘 있는 자(삼하 5:10)나 미약한 자(암 7:5)의 소송에 대해 동등하게 경청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윤리강령은 사람의 낮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말 "낮"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님'으로 '얼굴'을 뜻하며, '두려워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르(גור)'로 '무서워하다'라는 의미이다. 구약성서에서 '구르'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강한 사람이나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 앞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sup>39</sup> 결국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사람의 낮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베이올라(T. Veijola)에 따르면 이 용기는 재판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재판에 참여하시고, 재판의 공정한 출발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sup>40</sup> 결국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용기를 갖는 것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52집 (2014년 6월), 42-72.

39 D. Kellermann, art. גור (ThWAT I) (Stuttgart: Kohlhammer, 1973), 979-991.

40 베이올라, 앞글, 49.

(대전제) **공정한 판결**을 위해 자세히 듣고, 너희 형제처럼 이방인에도 동일하게 재판하라!

- ① 외모를 보지 말라!
- ②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라!
- ③ 사람의 낮을 두려워하지 말라!

## 2) 신명기 16장 18-20절

신명기 16장 18절에는 각 성읍에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임명하라고 지시한 후에 이들에게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말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체데크(צדק)’이다. 신명기 1장 16절에 “공정히” 판결하라고 할 때도 히브리어 ‘체데크’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신명기 16장이 말하는 ‘체데크’의 재판, 즉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 요청하는 윤리강령은 무엇일까?

법관들에게 제시한 첫 번째 윤리강령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여기서 ‘굽게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타(נָטָה)’로 이 본문 맥락에서는 ‘정의’를 곡해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출 23:6; 신 24:17; 27:19 등). 천사무엘은 이 표현을 “너희는 재판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다.<sup>41</sup> 천사무엘이 의도한 재판의 ‘악용’ 금지는 ‘공정’과 ‘정의’에서 벗어난 재판의 금지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관들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윤리강령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명령이다. 이 내용은 이미 신명기 1장 17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을 반복하고 있다. 법관들에게 주어진 윤리강령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41 천사무엘 외, 『신명기: 원문번역, 역사비평적 주석』(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359.

역으로 재판하는 법관들이 이 강령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세 번째 윤리강령은 뇌물을 받지 말라는 명령이다. 우리말 ‘뇌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쇼하드(שחָד)인데, 이 ‘쇼하드’는 구약성서에서 ‘선물(gift)’이라는 뜻으로 주로 번역되고 있고(왕상 15:19; 사 45:13; 잠 21:14 등), ‘뇌물(bribe)’과 관련해서는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뇌물’은 법관의 판결을 흐리게 할뿐더러 사회정의를 혼탁하게 만든다. 하지만 돈너(H. Donner)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뇌물수수로 인한 재판 왜곡은 사무엘의 두 아들(요엘과 아비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고 보며, 다만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정과 사법적인 분야에 관리로 고용된 후부터 수뢰(受賂)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sup>42</sup>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고대 이스라엘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리로 임명되어 활동했다는 증거를 찾을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뇌물수수 금지명령이 구약성서의 다양한 문학 장르에 나오고 있음을 고려할 때(출 23:8; 삼상 8:3; 대하 19:7; 잠 17:23; 사 1:23; 5:23; 겔 22:12; 암 5:12; 미 3:11) 고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미 수뢰(受賂) 행위가 만연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나 뇌물수수와 같은 도덕적 혐오감에 대한 예언자들의 비난은 구약성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sup>43</sup> 지혜문학 욥기에는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이 불탈 것이라며(욥 15:34) 수뢰죄의 참담한 결말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결코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신 10:17; 대하 19:7).<sup>44</sup>

42 H. Donner, "Die soziale Botschaft des Propheten im Lichte der Gesellschaftsordnung in Israel", *OrAnt* 2 (1963), 229-245.

43 예언자 아모스, 미가, 이사야, 에스겔을 통해 수뢰금지 명령을 쉽게 볼 수 있다. 참고. 김래용, "미가서에 나타난 미쉬파트와 쉘에리트", 『구약논단』 57집 (2015년 9월), 10-37.

44 K.-M. Beyse, art. dxv (TDOT XIV) (Grand Rapids: Eerdmans, 2004), 557.

(대전제) **공의로 재판하라!**

- 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 ②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 ③ 뇌물을 받지 말라!

### 3) 역대하 19장 6-7, 9, 11절

역대하 19장 4절 이하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민간을 순찰한 후에 각 성읍(5절; 지방법정)과 예루살렘(8절; 중앙법정)에 법관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딜라드(R. B. Dillard)에 따르면 법정에서 법관은 스스로를 야훼의 대리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야훼의 통치에 의존하고 있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법관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본다.<sup>45</sup> 그러나 송사의 결과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올바르게 해석해야 하는(10절) 법관의 위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한낱 신의 대리인 수준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구약성서 본문에는 송사에 대한 판정에 ‘체테크’를 드러내도록 법관의 선발기준과 윤리강령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하 19장에도 유다 왕 여호사밧은 지방법정과 중앙법정에 법관을 임명하면서 이들에게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윤리강령은 ‘재판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야훼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6절)이다. 이 내용은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이 야훼(יהוה)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바이다. 6절 후반절에 나오는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는 표현은 야훼께서 마치 법정에서 착석해서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윤리강령은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7절)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히브리어로는 ‘파하드 야훼

45 레이몬드 B. 딜라드, 『역대하』(WBC 15) (정일오 옮김) (서울: 솔로몬, 2005), 246-247.

(פחד יהוה)이다. ‘파하드 야훼’는 ‘야훼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의미한다. ‘파하드’가 야훼와 함께 쓰일 때 야훼 안에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호 3:5) 이때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이다. 하지만 뮐러(H.-P. Müller)는 역대하 19장 7절의 맥락에서 ‘파하드’는 야훼에게 압도당하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의미한다고 말한다.<sup>46</sup> 법관의 ‘파하드 야훼’ 경험은 공정한 판결로 이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윤리강령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야훼를 경외’(9절)하는 것이다. “진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אמונה)’로 ‘견고함’, ‘확고부동함’, ‘충실함’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이 맥락에서는 야훼께 대한 ‘신실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성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바브 샬렘(לבב שׁלם)’으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온전한 마음(a perfect heart)’인데, 히브리어 ‘샬렘’은 하나님과 화합하는 마음에서 언약관계를 지키는 ‘온전한’ 것을 의미한다.<sup>47</sup> 따라서 법관이 야훼를 경외하되 ‘에무나’와 ‘레바브 샬렘’으로 하라는 의미는 야훼에 대한 신실함과 야훼와 언약관계를 지킨다는 온전한 마음으로 재판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윤리강령은 ‘힘써 행하라’(11절)이다. 우리말 “힘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사(adverb)가 아닌, 동사 ‘하자크(חזק)’의 명령형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강하라!’, ‘견고하라!’, ‘확신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켈러와 바움가르트너에 따르면 이 맥락에서 ‘하자크’는 ‘용기를 내라!(Habt Mut!)’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KBL 290). 즉, 법관은 재판을 할 때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법관이 ‘체데크’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해 위의 네 가지 윤리강령을 지켜야 할 것을 제시한다.

46 H.-P. Müller, art. פחד (ThWAT VI) (Stuttgart: Kohlhammer, 1989), 552-562.

47 K.-J. Illman, art. שׁלם (TDOT XV) (Grand Rapids: Eerdmans, 2006), 97-105.

- ① 사람을 위한 재판인지, 야훼를 위한 재판인지를 잘 살펴라!
- ②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 ③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야훼를 경외하라!
- ④ 힘써 행하라!

## 5. 결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법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첫째는 공동체 대표자로서 법관들이 있었고(가장, 사사, 왕, 장로), 둘째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법관들이 있었으며(제사장, 레위 사람), 셋째는 임명직 관리로서 법관들이 있었다(고관, 전문직 법관 쇼페트). 이들 법관들이 선발될 때 기준안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8장과 신명기 1장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 주고 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먼저 법관을 선발하기 전에 광야시대 최초의 법관이었던 모세가 법률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한다. 출애굽기 18장에 능력 있는 사람이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 진실해야 하며,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관들에게 군대 지휘관의 임무까지 위임하게 된다. 신명기 1장의 법관 선발기준은 출애굽기 18장처럼 법률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이 각 지파에 위임하여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선발한다. 선발된 자들은 먼저 수령으로 임명하고, 이 수령들 중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으로 삼되, 법정에서 ‘법관’과 ‘관리’로 역할을 분담하면 된다. 이렇게 임명된 법관들에게 주어진 윤리강령들이 신명기 1장과 16장과 역대하 19장에 나온다. 신명기 1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시한 윤리강령으로 공정한 판결을 위해 이스라엘 형제의 재판이나 이방인 재판이 동등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대전제로

삼고 있다(16절). 신명기 1장이 제시하는 윤리강령의 세부사항으로 첫째 외모를 보지 말고, 둘째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야 하고, 셋째 사람의 낮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신명기 16장에서는 모세가 제시한 법관 윤리강령으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18절) 첫째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둘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며, 셋째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역대하 19장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제시한 윤리강령으로 첫째 사람을 위한 재판인지, 야훼를 위한 재판인지 살펴야 하고, 둘째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해야 하며, 셋째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야훼를 경외해야 하고, 넷째 힘써 행해야 한다.

이러한 법관선발기준과 윤리강령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체데크(צדק)’와 ‘미쉬파트(משפט)’의 실천을 회구했던 것이다.

## 6. 참고문헌

- 강성열, 『출애굽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 권성달, 『구약성경 히브리어』(개정 4판) (서울: 총신대학교 성지언어연구소, 2018).
- 김래용, “미가서에 나타난 미쉬파트와 쉘에리트”, 『구약논단』 57집 (2015년 9월), 10-37.
- 라이너 케슬러,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논단』 51집 (2014년 3월), 12-30.
- 레이몬드 B. 딜라드, 『역대하』(WBC 15) (정일오 옮김) (서울: 솔로몬, 2005).
- 로디 브라운, 『역대상』(WBC 14) (김의원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 롤랜드 E. 퍼피, 『잠언』(WBC 22) (박문재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 베이올라, 『신명기』(원진희 옮김) (서울: 동연, 2010).
- 소형근,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조직들과 재판관들”,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155-175.
- 앤더슨, A. A., 『사무엘하』(WBC 11) (권대영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 임태수, 『역대상』(성서주석 1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천사무엘 외, 『신명기: 원문번역, 역사비평적 주석』(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 최종원, “신명기의 사랑과 계약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52집 (2014년 6월), 42-72.
- 크리스티아나 반 하우튼,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이영미 옮김)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 한동구 외, 『신명기: 원문번역, 역사비평적 주석』(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 Allen, W. C., “On the Meaning of in the Septuagint”, The Expositor IV/10 (1894), 264-275.
- Beyse, K.-M., art. **תְּדוֹת** (TDOT XIV) (Grand Rapids: Eerdmans, 2004), 555-558.
- Boling, R. G., Judges (AB 6A), (New York: Garden City, 1980).
- Botterweck, G. J., art. **עֲבָרָה** (ThWAT III) (Stuttgart: Kohlhammer, 1982), 479-511.
- Conrad, J., art. **אֲזַיְרָה** (ThWAT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639-650.
- Crüsemann, F., Der Widerstand gegen das Königtum (WMNAT 4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_\_\_\_\_,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Chr. Kaiser, 1992).
- Donner, H., “Die soziale Botschaft des Propheten im Lichte der Gesellschaftsordnung in Israel”, OrAnt 2 (1963), 229-245.
- Eising, H., art. **חֵיל** (ThWAT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902-911.
- Illman, K.-J., art. **שָׁלֵם** (TDOT XV) (Grand Rapids: Eerdmans, 2006), 97-105.
- Kellermann, D., art. **גִּרָה** (ThWAT I) (Stuttgart: Kohlhammer, 1973), 979-991.
- Knierim, R., “Exodus 18 und die Neuordnung der Mosäischen Gerichtsbarkeit”, ZAW 73 (1961), 146--171.
- Meek, T. J., “The Translation of Ger in the Hexateuch and its Bearing on the Documentary Hypothesis”, JBL 49 (1930), 172-180.
- Müller, H.-P., art. **כֹּסֶם** (ThWAT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920-944.

- \_\_\_\_\_, art. פָּחַד (ThWAT VI) (Stuttgart: Kohlhammer, 1989), 552-562.
- Niehr, H., art. שָׂר (ThWAT VII) (Stuttgart: Kohlhammer, 1993), 855-879.
- Schneider, T. J., Judges (Berit Olam)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 Tigay, J. H.,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Israelite Religion in the Light of Hebrew Inscriptions (HSS 31) (Atlanta: Scholars Press, 1986).
- Weinfeld, M., "Judge and Officer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IOS 7 (1977), 65-88.
- Wildberger, H., Jesaja 1-12 (BK X)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0).
- Wolff, H. W., Micha (BK XIV/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74040#0000>

검색어

법관

선발기준

윤리강령

쇼페트

쇼테르

## Judge's Selection Criteria and Code of Ethics in Ancient Israel

Hyeong-Geun So,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aspects of ancient Israel's judicial organizations by examining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judges and their code of ethics in the Old Testament.

There were three types of judges in the society of ancient Israel; First, judges as representatives of the community (pater familias, judges, king, elders), second, judges as religious leaders (priests, Levites), and third, judges as appointed officials (high officials and shophet as professional judge). When these judges were selected, a standard draft was provided with specific informations in Exodus 18 and Deuteronomy 1. According to Exodus 18, Moses, the first judge in the wilderness era, must conduct legal education and select capable persons

www.kci.go.kr

as judges. In Exodus 18, capable persons must firstly fear God, secondly be sincere, and thirdly hate unrighteous interests. They even delegated the duties of commanders of the army to these judges.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judges in Deuteronomy 1 were delegated to each tribe to select the recognized and knowledgeable persons, unlike the mention of legal education in Exodus 18. They were first appointed as heads and among these the heads of thousands, hundreds, fifties, and tens were selected, and shared the roles as judges and administrators in the court.

For these appointed judges, the codes of ethics appear in Deuteronomy 1 and 16 and 2 Chronicles 19. Deuteronomy 1 is the code of ethics proposed by Jethro, the father-in-law of Moses, and presupposes that the judgment of the Israelites and the Gentiles should be equally conducted for a fair judgment (v. 16). The code of ethics presented in Deuteronomy 1 is firstly not to look at appearance, secondly to listen to the small and the great alike, and thirdly not to be afraid of the face of any. By the code of ethics for the judges, suggested by Moses, in order to judge the people with justice (v. 18) in Deuteronomy 16, judge should not turn aside judgment, discern faces, and take a bribe. According to the code of ethics, presented by Jehoshaphat king of Judah in 2 Chronicles 19, judges firstly consider that judgment should not be on behalf of human beings but on Yahweh's behalf, secondly let the fear of Yahweh be upon them and take care what they do, thirdly do in the fear of Yahweh with faithfulness and perfect hearts, and fourthly act with courage. Through these criteria for selection of judges and their code of ethics, the ancient Israel community sought after the practice of righteousness and justice.

## Keywords

Judge

Selection Criteria

Code of Ethics

Shophet

Shoṭer

- 투고일: 2020년 10월 5일
- 심사일: 2020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30일

[www.kci.go.kr](http://www.kci.go.kr)